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63

발의연월일: 2021. 6. 11.

발 의 자:김교흥・김수흥・박영순

박찬대 • 신동근 • 양정숙

이성만 • 이용선 • 정정순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를 할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이를 악용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입주자 서면동의서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동의서에 기재하여 입주자 등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 린 후에 동의를 받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의서를 보관하여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 항 및 제8항).

법률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동의서에 기재하여 입주자등이 이 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른 동의서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회계감사) ① ~ ⑥ (생	제26조(회계감사) ① ~ ⑥ (현행
략)	과 같음)
<u> <신 설></u>	⑦ 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
	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
	할 사유를 동의서에 기재하여
	입주자등이 이를 명확하게 인
	지할 수 있도록 알린 후에 동
	의를 받아야 한다.
<u><신 설></u>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른
	동의서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